

2024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및 정시모집] 기본계획

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확정·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금오공과대학교
입 학 처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모집 인원
수시	내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교과 100%	○	449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학생부교과 100%	○	200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 서류평가 100%	×	250
		학생부종합(SW창의인재전형)	- 1단계 : 서류평가 100%(5배수) - 2단계 : 1단계성적 70% + 면접평가 30%	×	5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 학생부교과 100%	×	55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학생부교과 70% + 면접평가 30%	×	6
	외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 학생부교과 100%	×	20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 학생부교과 100%	×	18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학생부교과 100%	○	48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학생부교과 70% + 면접평가 30%	×	20
	소 계				
정시	내	수능(일반학생전형 가군)	- 수능 100%	×	102
		수능(일반학생전형 나군)	- 수능 100%	×	142
		수능(일반학생전형 다군)	- 수능 100%	×	6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가군)	- 학생부교과 70% + 면접평가 30%	×	0
	외	수능(농어촌학생전형 가/나/다군)	- 수능 100%	×	0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가군)	- 학생부교과 70% + 면접평가 30%	×	10
	소 계				
합 계					1,331명

※ 정시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내) 및 농어촌학생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시 선발하며 정시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외)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II

2024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전형 및 모집인원 변경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비고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399명	학생부교과전형	449명	50명 증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100명	지역인재전형	200명	100명 증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00명	지역인재전형	0명	전형폐지
학생부종합	KIT인재	202명	KIT인재	250명	48명 증가
수능	일반학생전형	350명	일반학생전형	250명	100명 감소

□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구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년별 가중치	1학년 20%, 2, 3학년 각 40%	전학년 공통 100%
졸업생 성적반영	3학년 2학기 반영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정시모집 모집군 변경

모집단위명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공지능공학과 화학생명과학과	나군	가군
경영학과	나군	다군

□ IT융합학과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 폐지 - 모집인원 : 6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신설 - 모집인원 : 6명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

모 집 단 위	수시										소계
	내				외				내		
	교과								종합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고른 기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교 출신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KIT인재	SW 창의 인재	
기 계 공 학 과	30	14	4	-	1	1	3	-	17	-	70
기 계 설 계 공 학 과	14	6	2	-	1	1	2	-	9	-	35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47	20	5	-	1	1	5	-	26	-	105
전 자 공 학 부	78	34	7	-	1	1	8	-	42	-	171
건 축 학 부	20	8	3	-	1	1	2	-	10	-	45
산 업 공 학 부	30	12	3	-	1	1	3	-	14	-	64
신소재공학부	42	20	5	-	1	1	5	-	25	-	99
고분자공학과	10	5	1	-	1	-	1	-	7	-	25
소 재 디 자 인 공 학 과	13	6	1	-	1	1	1	-	6	-	29
화 학 공 학 과	10	5	2	-	1	-	2	-	7	-	27
토 목 공 학 과	17	8	2	-	1	1	2	-	10	-	41
컴퓨터공학과	27	12	3	-	1	1	3	-	16	3	66
컴퓨터소프트웨어 공 학 과	21	10	3	-	1	1	2	-	13	2	53
인 공 지 능 공 학 과	13	4	2	-	1	1	1	-	6	-	28
광 시 스 템 공 학 과	12	6	2	-	1	1	2	-	6	-	30
메 디 컬 I T 융 합 공 학 과	13	6	2	-	1	1	1	-	8	-	32
환 경 공 학 과	11	6	2	-	1	1	1	-	6	-	28
I T 융 합 학 과	-	-	-	6	-	-	-	20	-	-	26
화학생명과학과	12	6	2	-	1	1	1	-	8	-	31
수리빅데이터학과	12	6	2	-	1	1	1	-	5	-	28
경 영 학 과	17	6	2	-	1	1	2	-	9	-	38
소 계	449	200	55	6	20	18	48	20	250	5	1,071
정 원 내 기 준	37.0	16.5	4.5	0.5					20.6	0.4	
수시/정시기준	41.9	18.7	5.1	0.6	1.9	1.7	4.5	1.9	23.3	0.5	100
전 체 기 준	33.7	15.0	4.1	0.5	1.5	1.4	3.6	1.5	18.8	0.4	80.5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정시(가군)의 만학도전형 및 정시(가/나)군의 농어촌학생전형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하며, 정시(가군)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2022학년도 이월인원 포함(IT융합학과 1명)

(단위 : 명, %)

모 집 단 위	정시						소계	합계
	내				외			
	가	나	다	가	가/나/다	가		
	수능			수능	교과			
	일반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 계 공 학 과	17	-	-	-	0	-	17	87
기 계 설 계 공 학 과	9	-	-	-	0	-	9	44
기 계 시 스 템 공 학 과	-	27	-	-	0	-	27	132
전 자 공 학 부	-	45	-	-	0	-	45	216
건 축 학 부	-	8	-	-	0	-	8	53
산 업 공 학 부	14	-	-	-	0	-	14	78
신 소 재 공 학 부	26	-	-	-	0	-	26	125
고 분 자 공 학 과	9	-	-	-	0	-	9	34
소 재 디 자 인 공 학 과	8	-	-	-	0	-	8	37
화 학 공 학 과	8	-	-	-	0	-	8	35
토 목 공 학 과	-	9	-	-	0	-	9	50
컴 퓨 터 공 학 과	-	16	-	-	0	-	16	82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10	-	-	0	-	10	63
인 공 지 능 공 학 과	5	-	-	-	0	-	5	33
광 시 스 템 공 학 과	-	6	-	-	0	-	6	36
메 디 컬 I T 융 합 공 학 과	-	7	-	-	0	-	7	39
환 경 공 학 과	-	7	-	-	0	-	7	35
I T 융 합 학 과	-	-	-	0	-	10	10	36
화 학 생 명 과 학 과	6	-	-	-	0	-	6	37
수 리 빅 데 이 터 학 과	-	7	-	-	0	-	7	35
경 영 학 과	-	-	6	-	0	-	6	44
소 계	102	142	6	0	0	10	260	1,331
정 원 내 기 준	8.4	11.7	0.5					
수 시 / 정 시 기 준	39.2	56.6	2.3	0.0	0.0	3.8	100	
전 체 기 준	7.7	10.7	0.5	0.0	0.0	0.8	19.5	100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정시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내) 및 농어촌학생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시 선발하며 정시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외)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 2022학년도 이월인원 포함(IT융합학과 1명)

구 분		대 상 전 형	일 정
수시	원서접수	모든 전형	2023. 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모든 전형	2023. 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모든 전형	2023. 12. 15.(금)까지
	합격자 등록	모든 전형	2023. 12. 18.(월) ~ 21.(목)(4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모든 전형	2023. 12. 28.(목) 18:00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모든 전형	2023. 12. 29.(금)
정시	원서접수	모든 전형	2024. 1. 3.(수) ~ 6.(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4. 1. 9.(화) ~ 16.(화)(8일)
		나군	2024. 1. 17.(수) ~ 24.(수)(8일)
	합격자 발표	모든 전형	2024. 2. 6.(화)까지
	합격자 등록	모든 전형	2024. 2. 7.(수) ~ 13.(화)(7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모든 전형	2024. 2. 20.(화) 18:00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모든 전형	2024. 2. 21.(수)

※ 상기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

1. 모집인원 : 449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계열	반영영역수	필수영역	기준등급	반영방법
공학/이학	2	수학	9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수학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 1등급 상향적용 (3등급 → 2등급)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인문사회	2	영어	9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영어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1. 모집인원 : 200명

2. 지원자격 :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고교졸업 동등학력자, 국외고 졸업자는 지원불가)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계열	반영영역수	필수영역	기준등급	반영방법
공학/이학	2	수학	9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수학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 1등급 상향적용 (3등급 → 2등급)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인문사회	2	영어	9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영어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 학생부종합(KIT인재전형) 】

1. 모집인원 : 250명

2. 지원자격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고교졸업 동등학력자, 국외고 졸업자는 지원불가)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서류평가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서류평가

- 1)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2) 평가방법 : 제출된 전형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3) 반영점수 : 100점(최고점) ~ 16점(최저점)

5.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종합(SW창의인재전형) 】

1. 모집인원 : 5명

2. 모집단위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3. 지원자격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고교졸업 동등학력자, 국외고 졸업자는 지원불가)

4.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배수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 계
전 모집단위	1단계	5배수	100점(100%)	-	100점(100%)
	2단계	1배수	70점(70%)	30점(30%)	100점(100%)

5.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1) 서류평가

-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평가방법 : 제출된 전형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반영점수 : 100점(최고점) ~ 16점(최저점)
- ※ 2단계 사정 시 : 반영점수를 7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2) 면접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별 10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반영점수 : 30점(최고점) ~ 0점(최저점)

6.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

1. 모집인원 : 55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대상자

-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5)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6)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8)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의 자녀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 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1. 모집인원 : 6명

2. 지원자격

- 1)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재학 중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 3) 산업체 범위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면접평가	합 계
IT융합학과	일괄선발	70점(70%)	30점(30%)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면접평가

- 1) 평가방법 : 지원자별 10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 2) 반영점수 : 30점(최고점) ~ 0점(최저점)

6.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

1. 모집인원 : 20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본인만 해당하며 자녀는 지원불가)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

1. 모집인원 : 18명

2.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 출신고교의 기준학과가 본교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기준학과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졸업 동등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1. 모집인원 : 48명

2. 지원자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市)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적용기준”에 의함

2)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학교생활기록부의 입학일자 기준]

4) 제외 대상자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출신자, 고교졸업 동등학력자는 지원불가

※ 재학기간은 중·고등학교(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 교과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수능최저학력기준

계열	반영영역수	필수영역	기준등급	반영방법
공학/이학	2	수학	10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수학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 1등급 상향적용 (3등급 → 2등급)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인문사회	2	영어	10등급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영어 영역을 포함한 2개 영역의 등급합 - 탐구 : 상위 1과목(사탐/과탐만 반영) - 한국사 응시여부 확인

【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1. 모집인원 : 20명

2. 지원자격

- 1)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재학 중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 3) 산업체 범위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학생부교과	면접평가	합 계
IT융합학과	일괄선발	70점(70%)	30점(30%)	1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18p 참조

5. 면접평가

- 1) 평가방법 : 지원자별 10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 2) 반영점수 : 30점(최고점) ~ 0점(최저점)

6.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수능(일반학생전형 가군) 】

1. 모집인원 : 102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수능성적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20p 참조

【 수능(일반학생전형 나군) 】

1. 모집인원 : 142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수능성적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20p 참조

【 수능(일반학생전형 다군) 】

1. 모집인원 : 6명
2.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수능성적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20p 참조

【 수능(농어촌학생전형 가/나/다군) 】

1. 모집인원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의 미충원 이월인원

2. 지원자격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수능성적
전 모집단위	일괄선발	100점(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20p 참조

【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가군) 】

1. 모집인원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의 미충원 이월인원

2. 지원자격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과 동일함

3. 전형방법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가군) 】

1. 모집인원 : 10명(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의 미충원 인원이 있는 경우 이월합산)

2. 지원자격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과 동일함

3. 전형방법 : 수시모집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과 동일함

1. 교과영역 성적 반영방법

1) 반영과목

(1)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과목 중 우리대학이 지정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 관련 전 과목

- **과목석차등급(9등급)이 표시되는 과목만 반영**하며 성취도 또는 '•', 'P', '수' 등으로 표시되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진로선택과목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목의 진로선택과목 중 상위 2과목을 반영 (이수한 과목이 2과목 미만인 경우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하며 이수한 과목이 없는 경우 미반영)

2) 교과목 및 학년별 가중치

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공학/이학	100%	110%	110%	110%	100%
인문사회	110%	110%	110%	100%	100%

3) 반영방법

(1) 산출식

$$\frac{\sum(\text{과목별 등급 점수} \times \text{과목별 단위수} \times \text{과목별 가중치})}{\sum(\text{과목별 단위수} \times \text{과목별 가중치})}$$

(2) 최종 교과목 환산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등급별 점수

(1)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2)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A	B	C
등급	1	2	3
점수	100	98	96

2. 비교내신 대상자 성적 반영방법

1) 비교내신 대상자

- (1) 검정고시자, 비인가대안학교졸업자, 교과교육소년원 고교과정이수자 : 검정고시 성적반영
- (2) 국외고 졸업자 : 외국고의 성적증명서 상 성적 반영

2) 교과성적 산출방법

- (1) 검정고시성적 : 전과목 평균성적에 대해 아래 석차등급 및 등급별 점수 적용

점수	X≥90점	90점>X≥80점	80점>X≥70점	70점>X≥60점	60점>X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등급점수	96	94	92	90	70

- (2) 국외고 성적 : 국외고 학생부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석차등급 및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각 과목 등급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성적이 없는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하고 전체

국외고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0	89~87	86~80	79~77	76~70	69~67	66~60	60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1. 반영영역

모집계열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한국사
전계열	공통	반영	반영	반영	과학/사회	반영
	선택	모두 허용	모두 허용	-	모두 허용	-

※ 필수반영영역 미응시자 또는 필수반영영역 포함 2개 영역 이하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2. 반영영역별 점수 및 반영비율

모집계열		필수	선택	합계
공학 및 이학	영역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100점(100%)
	반영비율	40%	각 30%	
인문사회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100점(100%)
	반영비율	40%	각 30%	

※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 : 본인 취득 백분위점수 × 반영비율

※ 영역별 가산점(공학 및 이학계열만 해당)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 백분위 환산점수의 15%
- 탐구 : 과학탐구 과목별 백분위 환산점수의 5%

3. 영어영역 반영방법 : 등급별 점수를 계열별 반영비율 적용하여 환산함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4. 한국사 반영방법 : 가산점으로 부여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				0.9	0.8	0.7	0.6	0.5
	1			0.9	0.8	0.7	0.6	0.5	0.4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학생부	수 능	서류평가	면 접	합계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고른기회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100% (최고점 100점, 최저점 0점)	-	-	-	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 내, 외)		70% (최고점 70점, 최저점 0점)	-	-	30% (최고점 30점, 최저점 0점)	100%
	학생부 종합	KIT인재		-	-	100% (최고점 100점, 최저점 16점)		100%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1단계	-	-	100% (최고점 100점, 최저점 16점)	-	100%
			2단계	-	-	70% (최고점 70점, 최저점 11.2점)	30% (최고점 30점, 최저점 0점)	100%
정시	수능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	100% (최고점 100점, 최저점 0점)	-	-	100%
	학생부 교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 내, 외)		70% (최고점 70점, 최저점 0점)	-	-	30% (최고점 30점, 최저점 0점)	100%

2024학년도 대입전형 (재외국민) 기본계획

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확정·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금오공과대학교
입 학 처

1 주요사항

구분	주요사항	비고
모집유형	1. 입학정원의 2% 이내 : 24명 2. 전교육과정 이수자(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포함) : 선발인원 제한없음 3. 북한이탈주민 : 선발인원 제한없음	
지원자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어 2.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정(12개 학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선발방법	▪ 고등학교 교과성적 100%	

2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 원서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2023. 7. 3.(월) ~ 7.(금)

※ 원서접수 일정 및 접수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음

2. 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 없음

3. 합격자 발표 : 2023. 11월말까지

※ 순수외국인(화교 포함) 및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모집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 집 단 위	학과 및 전공(과)	입학정원의 2% 범위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모집단위별 10%)	입학정원의 2% 범위
기계공학과		8명	24명 이내
기계설계공학과		4명	
기계시스템공학과		12명	
전자공학부	반도체시스템전공	20명	
	제어및로봇전공		
	전자통신전공		
	전자및전파전공		
	전자IT융합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4명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7명	
	디자인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11명	
고분자공학과		3명	
소재디자인공학과		3명	
화학공학과		3명	
환경공학과		3명	
토목공학과		4명	
컴퓨터공학과		7명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명	
인공지능공학과		3명	
광시스템공학과		3명	
메디컬IT융합공학과		3명	
화학생명과학과		3명	
수리빅데이터학과		3명	
경영학과		4명	
합 계		113명	24명

- ※ 1.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선발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구분	자격요건	최저 국외 재 학/거주/체류기간(년)					학력요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 학	체 류	재 직	체 류	체 류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한 자	3년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3년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2.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는 재외국민

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전교육 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입학 본부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3. 지원자격 관련기준 및 해설

□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 연수 ·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준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 예외적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재학연한 인정기준**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닐 수 있음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거주기간, 학력,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금오 공과대학교 입학처에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5 전형방법

1. 전형방법 : 고등학교 교과성적 100%

2. 성적산출 방법

가. 국내고 : 이수한 전과목 중 과목별 석차등급이 부여된 과목에 대해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성취도만 있는 과목 미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나. 국외고 : 이수한 전과목 중 과목별 성적을 아래 표에 따라 석차등급 및 등급별 점수 부여

국외고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성적	100~97	96~90	89~87	86~80	79~77	76~70	69~67	66~60	60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다. 산출된 전과목의 등급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교과성적으로 반영

- 성적이 없는 과목은 성적산출에서 제외
- 최종 교과반영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

3. 선발원칙

가.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입학전형요소 성적(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선발방법

가.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모두를 예비합격 후보자로 선발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예비합격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

나.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의 20%범위(소수점은 절사하며,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내에서 전체 지원자의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총 입학정원의 2% 이내 여석)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선발
- 지원자격 충족자 중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모두를 예비합격 후보자로하고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후보순위에 따라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충원합격자를 선발
- 후보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다. 동점자 처리원칙

-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1) 1순위 : 국외고 학생부 교과성적 중 수학성적이 높은 자
 - 2) 2순위 : 해외 수학 기간이 긴 자
-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수학 기간이 긴 자

6 제출서류

- ☐ 추후 모집요강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원본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함
-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입학원서(본교서식) 3. 지원자 종합기록표(본교서식) 4. 자기소개서(본교서식) 5. 학업계획서(본교서식) 6. 코로나-19 소명자료(해당자에 한함)
국외 근무자의 자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7. 여권사본(부, 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해당)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해당)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4. 국적취득사실증명서(또는 귀화허가 통지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본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